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일자리정책과)

의안번호	제115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4. 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가. 관내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국가자격시험,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나. 기존 조례상 상위법명과 달리 작성되어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‘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’ 사업 근거 규정 명시(안 제8조 4항) 및 재정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 신설(안 제8조 5항)
나. 법명에 맞추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으로 수정(안 제15조 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 6,300만원 반영
다.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(2023. 2. 16. ~ 2023. 3. 8. (20일간))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,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8조(고용 확대 및 취·창업지원)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근거를 만들었음.
- 제4항 : 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(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”
- 제5항 : “지원대상의 범위·요건·절차·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”

○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주요내용

- 지급대상 :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북구 거주중인 미취업청년 (19~39세), 600명
- 세부기준 : 신청일 현재 기준 미취업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
- 지원내용 : 1인당 10만원 이내 응시료 실비 지원
- 지원종류 : 어학능력시험(토익 등)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) 등
- 사업일정 : 7월 1일 신청 접수 시작 예정 ~ 예산 소진 시
- 사업예산 : 6,300만원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청년들이 취업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,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근거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.